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정은경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발달장애인의 적절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하여 국가가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에게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,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업무 중 일부를 발달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0880호, 2025. 4. 1. 공포, 2025. 10. 2. 및 2026. 4. 2. 시행)됨에 따라, 국민연금공단이 재위탁할 수 있는 업무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신청 접수 및 상담 등을 정하고,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재위탁 업무의 범위 및 기간 등이 포함된 재위탁 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

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전문인력의 자격에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6. 4. ~ 7. 1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·도지사는”을 “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”으로, “위탁한다”를 “위탁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법 제33조제2항”을 “법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”으로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7항 전단에 따라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(이하 “재산관리 지원서비스”라 한다)의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.

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3(업무의 재위탁) ① 국민연금공단은 법 제41조제7항 후단에 따라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발달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.

1.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신청 접수 및 상담
2. 개인별 재산관리 지원계획의 수립

3. 그 밖에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업무

② 국민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위탁 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재위탁 업무의 범위 및 기간

2. 재위탁 업무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
3. 재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”을 “제3항·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의2. 법 제29조의4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
별표 1 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의 자격기준란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

바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의2(업무의 위탁) ①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6조의2(업무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
	<u>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 제7항 전단에 따라 법 제29조의 4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(이하 “재산관리 지원서비스”라 한다)의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.</u>
<u>② 시·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.</u>	<u>③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-----</u> ----- ----- <u>위탁할 수 있다.</u>
1. <u>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</u>	1. <u>법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-----</u> -----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제16조의3(업무의 재위탁) ① 국민연금공단은 법 제41조제7항 후단에 따라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발달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.</u>
	<u>1.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신청</u>

	<u>접수 및 상담</u> <u>2. 개인별 재산관리 지원계획의 수립</u> <u>3. 그 밖에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업무</u> <u>② 국민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위탁 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u> <u>1. 재위탁 업무의 범위 및 기간</u> <u>2. 재위탁 업무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</u> <u>3. 재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</u> <u>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
제17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국가(법 제41조제2항 전단,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와 지방자치단체(해당 권	제17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----- ----- 제3항·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-----

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~ 11. (생략)

<신 설>

12. ~ 14. (생략)

② · ③ (생략)

[illegible]

1. ~ 11. (현행과 같음)

11의2. 법 제29조의4에 따른 재
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에 관
한 사무

12. ~ 14. (현행과 같음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353